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과태료 징수·부과 권한을 위임하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수입 및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(안 제28조제1항제10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법 제63조제1항각호 및 같은조 제2항제3호·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 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~ ⑨ (생략)	제28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법 제63조제1항각호 및 같은조 제2항제3호·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② ~ ⑨ (현행과 같음)